

건전 가정의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金誠一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장

1. 문제의 제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가치관과 사회관행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삶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가정의례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 그동안 법령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 의식 수준 미흡 등으로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오히려 과도한 호화 혼례 등 파행적 행태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례의 호화화, 대형화 등 비합리적 가정의례의 성행으로 사치·과소비 등 불합리한 소비행태가 만연되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건전 가정의례 정착 방안 마련이

보건복지제도개혁과제 및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 등 7가지 허례허식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정도가 낮고¹⁾ 법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반면, 아직도 청첩장의 과다 사용, 호화혼례, 호텔 등 대규모 식당에서의 음식물 접대 등 낭비행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허례허식행위의 엄격한 규제와 건전 의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1) 조남훈 외 5인,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조사 결과』, 한국사회연구원, 1993, p.89 이하에서 대부분의 법률 금지 조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조항의 철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2. 가정의례 제도 및 법령의 변천 과정

가정의례는 사생활적 성격이 강한 분야이지만, 형식 위주의 지나친 의례가 사회생활 전반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강요하고 조장한다는 인식하에 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낭비 억제와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례 절차를 합리화하고자 하였으나, 이 법률은 가정의례 의식절차가 주된 내용으로서 권고적·훈시적 법률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권고적 규정만으로는 가정의례를 합리화하기 곤란하여 '73년 3월 13일 제1차 개정을 통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 허가제 및 요금 최고한도액 고시제와 허례허식행위 금지 규정 신설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서 '80년 12월 31일 제2차 개정을 통하여 허례허식행위 금지사항을 일부 조정함과 동시에 호화혼례 방지를 위해 호텔에서 의례식장 영업을 금지시켰으며, '93년 12월 27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율화 및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간소한 범위 안에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 초청을 허용하는 등 허례허식행위 금지사항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가정의례 영업 허가제와 요금 고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등의 무료·실비 예식

장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의례식장의 공급을 늘려 의례영업의 시장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종전의 의료기관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하고 장의용품 판매를 자유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하였다.

3. 가정의례의 실태와 문제점

가. 혼례의 경우

〈표 1〉의 혼례비용 추이에서 보듯이 196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양가 부담 총 혼례 비용을 비교해 보면 절대액에 있어 6~12배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 증가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도 '80년대까지만 하여도 도시근로자의 약 1년치의 평균소득에 머무르던 혼례비용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1.5~2년간의 평균소득액에 육박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신랑측의 부담 증가에 따른 보상 심리 등으로 신부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며 혼례 총비용이 증가되었다. 또한 주택 마련 비용 및 교통 혼잡 관련 사회 비용을 제외한 혼례와 관련된 직·간접 총비용이 연간 약 12조원에 이르는 등 '80년대 후반 이후 혼례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

하객 초청 범위의 일부 허용 이후 혼주의 세(勢) 과시와 동시에 금전적 이득

추구를 위해 하객을 과다하게 초청함에 따라 혼례 규모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예식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초래되고 있고, 피로연의 고급화·대형화로 혼주측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질주의,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혼수 가치수의 증가, 예단·예물의 대상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야외 사진 촬영, 이벤트 행사, 해외 신혼여행 등 신종의 허례허식

'80년대까지만 하여도 도시근로자의 약 1년치의 평균소득에 머무르던 혼례비용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1.5~2년간의 평균소득액에 육박하게 되었다.

적 예식의 증가는 혼례식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물론 과소비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다.

표 1. 혼례비용의 증가 추이

(단위: 만원, 1994년 불변가격으로 확산)

비 용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1990	1993	1994
총 혼인비용	375	1,368	1,190	2,370	2,801	4,196
남자	-	830	494	1,003	1,112	1,820
여자	-	538	696	1,367	1,689	2,376
여자/남자	-	0.6	1.4	1.4	1.5	1.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5	45	88	88	157	170
혼인비용/근로자 소득	10.7	23.5	13.5	13.5	17.8	24.5

자료: 이현송·배화옥,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8.

나. 상례의 경우

대도시 핵가족 중심의 아파트 주거생활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례 장소의 부족 및 불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1993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특히 '90년대에 들어

와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3년 병원 사망의 비율은 8.0%였으나, 1993년 18.1%로 증가하여 1990년 대비 4.3%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사망

(’93년 10.9%)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장례를 치루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병원과 기타의 사망을 포함한 수치는 거의 모두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가 치루어진다고 보는 경우 병원 영안실의 장례는 1993년 최소한 30%를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병원 사망 환자 증가 추세는 종전 병원 영안실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양성화했음에도 공급 부족을 초래하였다. 또한 90% 이상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서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병원 장례식장의 공급 능력 부족은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병원 내의 사망환자 장례 한계로 병원 밖의 사망자에 대한 병원 장례식장 수용을 기피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 수준이 열악하여 장례의 일정 및 장례 수행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병원 장례예식장을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에서는 장의업자에게 위탁운영 또는 임대차 방식의 형태로 운영되어 폭리를 유발하게 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희소한 병원 영안실을 소유한 지배적 위치의 병원측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면 임대업자는 병원과의 배타적 계약관계의 특성상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임대 구조는 장례식장 임

대료 및 수수료의 왜곡을 야기하게 되고, 또한 관, 수의 등 장의물품을 끼워 파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4. 건전 가정의례 정착 방안

가. 기본방향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춰 국민생활 관습도 자율과 창의에 입각하여 유지·발전시켜 나가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강화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기되, 과소비,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법령 규정과 제도가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사회 관습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권장 모델을 설정하여 건전 가정의례가 자율 정착되도록 범 시민 사회운동 전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1) 법령 및 제도 개선

— 허례허식행위 금지 사항의 합리적 조정

① 하객 초청 및 부고의 제한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 금

지 또는 현행과 같은 일부 허용에 대하여 국민 의식행태에 맞게 전면적인 검토 후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새로운 부조문화의 창출

현재의 부조금은 상부상조의 의미를 넘어섰다고 생각되므로 따라서 근본적으로 부조금의 수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피로연 접대 및 답례품 증정 억제

호화예식의 경우 예식비용의 대부분이 피로연 접대에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하객들은 예식에 참석하지 않고 단지 부조만 하고 피로연장으로 직행하는 과행적 관행을 보이고 있는 바, 피로연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피로연장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 화환 진열 기타 과시적 행사의 억제

상례시 조화 과다 진열 등 과시적 행사는 더욱 억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공공시설 등에서의 이벤트 행사도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⑤ 허례허식 금지조항의 실효성 확보

허례허식 금지사항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위반자의 명단을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방안은 법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여 이의 제도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기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대형 예식장 설치 억제 및 교통 혼잡 해소 방안 강구

대형 예식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 방안으로 예식장의 시설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대형 예식장에 대하여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도심내의 예식장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겠다.

－ 예식장 영업 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혼례식 영업제도의 개선

혼례식장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식이 특정 시간에 집중되거나 시설이 좋은 예식장을 선호함에 따라 일시적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의 사용 관행 개선과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현행 신고 영업제를 자유

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 현재 혼인예식장 1,781개소, 장례식장 326개소, 무료·실비예식장 1,98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영업제로 전환하되 시설이 대형화·호화화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되는 예식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용료를 현재의 실비 수준에서 실질적인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장례식장의 공급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전문 장례식장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도시계획상의 신규 개발 지구에 전문 장례식장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기존의 묘지 주변 지역에 전문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례식장 신·증축 자금 용자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임대료의 경우 직영에 비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병원 장례식장 직영 유도과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등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종교기관이 경건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밝혀짐에 따라 종교기관의 시설이 전문 장례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이 시설의 개선 없이 종전 시체실 수준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특히 장의용품

전시 판매실이 없어 가격표만 보고 선택·구매케 됨으로써 공급자가 재질을 속이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체 안치시설, 예식실, 빈소 등 기본시설 이외에 장의용품 전시판매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의용품의 품목별 재질, 규격별 통상 명칭과 생산업소별 명칭 등이 혼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적정 가격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장의용품의 명칭, 재질, 규격 등 품질표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건전 가정의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혼례 관련 문제의 주된 대상 계층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회의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다. 중류층의 경우 강렬한 계층 상승의 욕구로 상류층의 관습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건전한 혼례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지도층의 변화 없이는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을 위한 어떠한 사회운동도 실효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지도층의 솔선 수범과 함께 각종 시민단체가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범 시민적인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정의례 정보체계의 구축

건전한 가정의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의 민원실이 의례식장을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PC 통신 등을 통하여 무료·실비 예식장 이용 안내 등 건전 가정의례 실천 관련 정보들이 쉽게

건전 가정의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검색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보고서 96-03(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95-04(장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포럼』 11월호

이 달의 초점

1997년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 최병호
OECD가입과 보건부문 통계의 과제 · 계훈방
OECD가입 이후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 · 이성기
청소년 약물남용 대책 · 이경호

현안분석

1994년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와 부문별 구성비 변화 · 정영호
농어촌지역 국민연금관리의 현안과제와 대책 · 김용하
장애노인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 이정우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전방향 · 남정자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주기중